밀양시 공고 제2026-2436호 【전자계약대상】

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(긴급)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(단위 : 원)

공 사 명	사업 개요	위치	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	도급자 관급자재	추정금액	공사기간
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통신공사	설계서 참 조	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일원	204,709,091 20,470,909 225,180,000	-	225,180,000	착공일로부터 12개월

※ 관급자 관급자재: 195,020,000원

※ 1차분 발주금액: 45,320,000원(낙찰률 적용 없음), 공사기간: 180일

○ 공사개요: 통신공사 1식

○ 공사구분: 신설공사

2. 입찰참가자격

○ 「정보통신공사업」에 의한 **『정보통신공사업』** 면허소지 · 업종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하며,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, **입찰 공고일 전날【**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**】부터 입찰일**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**까지** 법인등기부상 본점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)이 **경상남도 도내**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
○ **전자입찰방식**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,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(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)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3.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: 2026. 10. 20.(화) 09:00 ~ 2026. 10. 22.(목) 12:00

4.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10. 22.(목) 13: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

5. 입찰방법

○ 본 공사는 **총액입찰, 전자입찰, 적격심사 대상** 사업입니다.

○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』(http://www.g2b.go.kr)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6. 낙찰자 결정방법

○ 예정가격은 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』의 "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"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± 3%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4항에 따라 **순공사원가(재료비 · 노무비 ·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)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**됩니다. **※ 순공사원가: 184,067,422원**

○ **낙찰하한율(89.745%)**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,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○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적격심사는 **<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[별표 6]> 추정가격이 4억 원 이하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.**

○ 시공경험 평가는 "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"을 적용하며, **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정보통신공사업 100%**입니다.

○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1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7. 입찰보증금

○ 입찰보증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.

○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/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, 입찰보증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,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.

8. 입찰의 무효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」에 의합니다.

9. 하도급 관련사항

○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,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.

○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,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**하도급 계약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밀양시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.**

10.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

○ 본 공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"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" 규정에 따라 **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 「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가 적용되는 공사**이며, **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**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밀양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**

11.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

○ 건강보험료, 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사후 정산(기성 및 대가지급 시) 하며,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 원)

국민건강 보험료	국민연금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퇴직공제 부금비	안전관리비	품질관리비	합계
3,522,824	4,654,636	462,899	2,456,326	2,253,823	-	-	13,350,508

12.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

○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, 물량내역서는 밀양시 교통행정과☏055-359-5346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13. 「하도급지킴이」(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) 이용에 관한 사항

○ **「하도급지킴이」** 시스템 이용대상은 **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**하는 공사입니다.

○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**전자입찰서에 "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"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**합니다.

○ 낙찰을 받은 자는 **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'표준하도급계약서' 기반)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**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 · 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○ 또한, **하도급 대금, 노무비 등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**하여야 합니다.

14.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

○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○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5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○ **본 공사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.**

○ **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(낙찰통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)하여야 하며,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**

○ **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「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」를 계약서 초안에 첨부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에 포함 제출해야 합니다.**

○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≪중대재해처벌법 제4조, 제9조≫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

① **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**

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
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
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16. 기타사항

○ 도급업체는「밀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며,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,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(지방계약법령, 회계예규 등)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○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.

○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(1588-0800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○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(부가가치세 제외)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 1.25%를 소화해야 합니다.

○ 입찰에 관한 문의: 밀양시 회계과 계약담당(☏055-359-5146)

※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: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(☏055-359-5346)

○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: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(☏1588-0800)

○ 개찰결과는 개찰 후 『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g2b)』(http://www.g2b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0. 16.

밀 양 시 재 무 관

붙임 **안전보건관리계획서(예시)**

안전보건관리계획서

일반사항	▣ 기관정보			
	업체명		현장책임자	(직위)
	대표자	(성명)		(성명)
	작업명		작업장소	(연락처)
	작업내용			
	작업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일)		
	▣ 계약현황			
	1. 계약 금액 : 월 2. 안전보건관리비(편성금액): 원 ※ 사후정산서 제출 ·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, 안전보건교육비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,건강진단 비용 등 ·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참고			

▣ 안전보건관리계획

①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	②-1. 안전보건관리체제
[그림 형태로 추가 가능]	※ 전체 근로자 수 : 총 명 ※ 작업장 근로자 수 : 총 명 - OO작업(업무) 명, OO작업(업무) 명 - OO작업(업무) 명, OO작업(업무) 명 [조직도] **본사 조직 포함하여 작성* *[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등 포함]*

②-2.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

역할		성명	직책/직위	연락처
안전보건관리책임자				
관리감독자(현장책임자)				
작업장 안전관리자				
작업장 근로자	*[작업관련 역할 기재]*			

※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책임자인 경우 관리감독자 항목의 [현장책임자]는 삭제,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'작업장 근로자' 항목 삭제

안전보건관리계획서

③ 안전보건관리계획

◎ 작업계획, 내용 및 방법

-
-
-
-
-

◎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
-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수시점검
 · 점검 방법 기재
-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
 · 모니터링 방법 기재

◎ 보호구

종류	용도

**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"보호구 관리대장". "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" 및 기계기구 관리대장"양식을 배부하면 철저히 관리*

◎ 유해·위험물질 관리계획

제품명	화학물질명	위험성

- 유해·위험물질 관리계획
 ·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게시 및 경고표시 부착
 · 유해·위험물질 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 실시
 · 보호구 착용

◎ 사용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

제품명	용도	안전조치 방법

*안전조치 방법 : 방호조치, 안전인증/ 자율안전확인 / 안전검사

- 기계·기구 관리 계획
 ·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기적 안전검사 실시

④ 유해·위험요인 및 예방대책(위험성평가)

작업내용	유해·위험 요인	예방대책

위험성평가 (예정)일 : 2026년 월 일 * 수시 위험성평가보고서 별도 서식 참조

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[최초-정기-수시평가용] <약식버전 예시>

사업장명		위험성평가 실시규정〈예시〉 (최초-정기-수시평가용)	담당자	검토자	근로자 대표	승인자
작성일자 (개정일자)	()				해당 시	

목적	·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
방법	· **3단계판단법(상·중·하)**을 채택한다. · 이외의 사항은 「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」를 따른다.
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	· 상: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을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· 중: 근로자가 연속하열 3일 이상의 휴업을 해야 하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· 하: 근로자가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
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	· "하"

위험성평가 실시 원칙

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
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.
③ 관리감독자는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
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.
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,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.

세부 역할

안전보건관리 책임자 (성명)	· 위험성평가 총괄 ·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· 예산 편성·집행 · 아차사고 사례 발굴 등 지원	**관리감독자** (성명)	·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·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 지원 · 위험성 결정 지원 · 평가 참여 및 TBM 실시
참여 근로자 (성명)	·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참여 · 유해 · 위험요인 제보 ·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 · TBM 참여	**위험성평가 담당자** (성명)	· 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· 실시규정 작성, 정보 수집 · 근로자 교육 실시 · 위험성평가 기록·공유

세부 실시규정

평가 시기	· 최초 평가(OOOO년 O월) · 수시 평가(사유 해당 시) · 정기평가 (매년 O월)
평가 대상	① 회사 내 ·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·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·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(협력업체 포함) 및 비일상적 작업(수리 · 정비 등)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· 위험요인
평가 절차	· 사전준비 →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 → 위험성 결정 →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→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· 근로자 교육 및 공유

평가절차별 중점사항	① 사전준비: 정확한 작업분류,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한다.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한다. 사업주, 담당자,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한다. ②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: 작업공정별 유해 ·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. ③ 위험성 결정: 현재의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한다.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: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한다. ⑤ 기록 · 공유: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,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한다.
교육방법	·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. · 핵심 유해 ·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.
교육일정	· 전 직원에 대해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를 실시한다.
공유방법	·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. · 작업 · 공정별 주요 주의 ·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 · SNS 등으로 전송한다.
공유일정	· 사업장 게시: 위험성평가 직후부터 상시 · 작업별 주의 · 준수사항: 수시 및 매 작업일 작업지시 시간 활용
기록 관리 방법	· 최초 · 수시 ·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(KRAS 활용 추후 검토)

수시평가 실시 시기

· 사업장 건설물 설치 · 이전 · 변경 · 해체
· 기계 · 기구, 설비,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· 변경
· 건설물, 기계 · 기구, 설비의 정비 또는 보수
·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
·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
·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세부 실행계획

착수회의 (사전준비)	· (일시) · (목적) *실시규정 확정 및 실시일정 수립*
교육회의 (위험성평가 실시)	· (일시) · (목적) *담당자 교육 및 근로자 교육일정 수립*
실시회의 (결과 공유 및 교육)	· (일시) · (목적) *절차별 참여자 확정 및 실시계획 확정*

도급사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상 위험정보

작업 및 사업명			수행업체명			
공정 (작업) 순서	기계.기구 및 설비		유해화학물질			기타 안전보건상 정보
	기계.기구 및 설비명	수량	화학 물질명	취급량 /일	취급 시간	
안전관리 (공통)						○ 3년간 재해발생사례 ○ 아차사고 사례 ○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□ / 1년미만 미숙련자 □ 고령근로자 □ / 비정규직 근로자 □ 외국인 근로자 □ / 장애근로자 □ ○ 교대작업 유무 (유□, 무□) ○ 도급작업 유무 (유□, 무□) ○ 작업표준 유무 (유□, 무□) ○ 운반수단 (기계□, 인력□) ○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(유□, 무□) ○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(kg) 및 취급형태 (들기 □, 밀기 □, 끌기 □) ○ 작업환경측정 실시유무 (실시□, 미실시□, 해당무□) ○ 특수건강진단 유무 (실시□, 미실시□, 해당무□) ○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(유□, 무□)

도급사업 위험성평가표 (3단계 판단법)

■ 도급·용역·위탁 사업명:	■ 실시 일자:
■ 평가대상 작업: 안전·보건 관리(공통)	■ 평가자 :

번호	유해·위험요인	위험성 확인결과			위험성 감소대책	개선 완료일	담당자 (확인자)	비고 (적정 또는 보완사유)
		상	중	하				
1	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?	○						
2	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가?		○		*근로자 건강검진 실시*	*2026. 6. 5.*	○○○	
3	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보장하고 있는가? (휴식장소 포함)							
4	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는가?							
5	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가?							
6	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가 공유 되었는가? (회의,교육,게시,TBM 등)							
7	적정한 소화설비(소화기 등)은 설치되어 있는가?							
8	안전보건표지가 부착되어 근로자가 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가?							
9	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(온열질환 등) 예방조치는 적절한가?							
10	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(한랭질환 등) 예방조치는 적절한가?							

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

번호	유해위험요인(개선전)	위험성감소대책(개선후)	개선내용
해당 번호	[개선 전 사진 첨부]	[개선 후 사진 첨부]	*파란색 글자기울임*

안전보건관리계획서

⑤ 안전보건교육

교육과정	교육일시	교육방법

* 교육과정 :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4]에 따른 과정
* 상주 협력업체의 경우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여 교육 과정별 모두 작성

⑥ 안전작업허가 (해당 항목 체크)		
	작업허가서	☐ 화기작업 ☐ 굴착작업 ☐ 밀폐작업 ☐ 기타 안전작업
	작업계획서	☐ 차량계 건설기계 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☐ 중량물 취급

⑦ 신호 및 연락체계

⑧ 비상대응절차

◎ 비상대응절차

사고발생
↓
작업중지 · 근로자 대피 (비상정지 및 전원차단)
↓
초기 대응 및 비상조치 · 재해자 응급조치
↓
신고 및 현장보존 · 업체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보고
↓
산업재해조사표 제출 ·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
↓
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개선 · 재발방지계획 수립(원인, 재발방지 및 대책)

◎ 비상연락망 및 업무분장

직책/직위	성명	연락처	업무분장

◎ 기관 및 외부연락망

[관할 고용노동부]	*[연락처]*

⑨ 재해발생수준

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: 건
(재해율 확인서(기업용) ,공표대상 확인(정부기관용)

부정·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청렴 밀양

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, 이의신청 방법,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**「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」**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(공사)

사업(발주)계획 → 입찰공고(현장설명 등) → 입찰 → 낙찰자 결정 → 계약체결 → 계약이행(착공 등) → 청구 → 검수·검사(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) → 대가지급(기성금·준공금 등)

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

【금품수수】 돈, 선물, 강연료, 기부금 등을 **요구**하지도 **제공**받지도 않습니다.

【향응수수】 식사,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**제공**받지도 않습니다.

【편의제공】 숙박·교통편의, 행사협찬, 업무지원 등 편의를 **요구**하지도 **제공**받지도 않습니다.

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**【신고안내】**에 따라 **실명 또는 익명(신고인 비노출)으로 신고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 부정·부패 척결 신고 안내 】

QR코드를 스캔하세요

실명신고: 공보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-359-5713
익명신고: **밀양시청 홈페이지**>전자민원>신고센터>익명신고
【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】
※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!